

[일련번호 : 7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과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및 관리·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판로지원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·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(이하 “경쟁제품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그리고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자간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」 (중소벤처

처기업부 고시)에 따르면 ♣♣♣♣♣ 컨테이너 초소(컨테이너하우스)는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과는 ♣♣♣♣♣ 컨테이너 초소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 1천만 이상의 제품 조달계약을 할 때는 그 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.

[표]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 내역

사업명	사업내용	계약금액	계약일	납품일	계약상대자
양천구 ♣♣♣♣♣ 컨테이너 초소 구매		19,781천원	2022.5.30.	2022.06.14	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